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87 호 2019. 8. 1.(목)

선	기 관 의 장
람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80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81호[울산광역시 북구(농소3동)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83호[소하천 준공인가 고시]..... 3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180호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동 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명촌 23길 8

3. 점용 목적 및 개요

공작물의 설치(전주)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천곡동 1020-1번지 외 필지

나. 면적 : 1.568㎡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일시 : 2019. 8. 7. ~ 2019. 9. 6.

영구 : 2019. 9. 7. ~ 2023.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81호

울산광역시 북구(농소3동)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농소3동 가축사육 제한지역 고시내역

(단위:m²)

구분	행정구역 면적	축종별 거리제한 지역					
		합계	가축사육제한 (100m미만)	100m이상 250m미만	250m이상 500m미만	500m이상 800m미만	800m이상 1000m미만
농소3동	31,100,015	29,422,757	9,032,986	6,420,468	7,408,112	4,974,918	1,586,273

※ 축종별 거리제한 : 소 100m, 젓소 250m, 양·말·시슴 500m, 돼지 800m, 닭·오리·개·메추리 1,000m

3.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web/index.jsp>)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41-7773)로 문의

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183호

소하천 준공인가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하천정비 준공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소하천정비 개요

가. 소하천등 정비의 명칭 및 시행 위치 : 제2울동천 (양정동 779번지 일원)

나. 착공 및 준공 연월일

착공 : 2019. 05. 22.

준공 : 2019. 07.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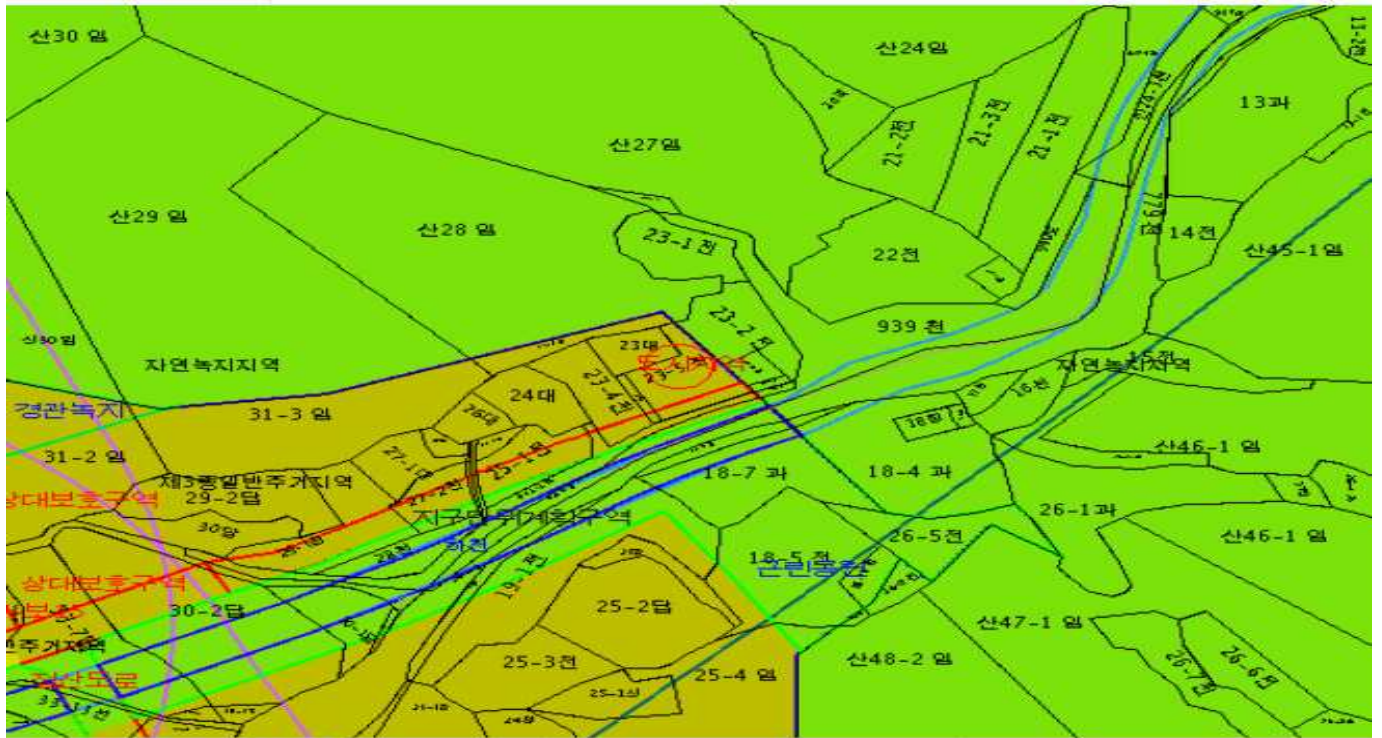
2. 소하천등 정비 시행자의 명칭

울산도시공사 대표 성인수

3. 소하천등 정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점용면적(㎡)
북구 양정동	776번지	천	4,851	173

4.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범례

축척변경

인쇄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장애물제한표면구역
- 소하천구역
- 상대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
- 보행자전용도로

축척 1 / 2400

인쇄

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가. 집중호우 예상 시, 현장 위험요소 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방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및 피해보상 하여야 합니다.
- 나. 하천개수를 위한 하천공사 및 도로확장공사 등 국가계획 및 공익상 필요하거나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 시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공작물의 이설 또는 철거가 요구될 경우 피허가자 부담으로 이설 또는 철거해야 하고 이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 본 허가에 따른 구조물은 허가목적외로만 사용가능 하며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소하천정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점용·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의 이전·제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라. 그 외 사항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합니다.